

동작구의회공고 제2023-90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동작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의 운영 근거가 되고 있는 본 조례에 후생복지사업의 종류를 신설하여 직원 후생복지를 확대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성비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직원 후생복지사업의 종류 확대(안 제12조)
 - 소속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 시행의 근거규정 신설
- 나. 자치법규 내 위원회 위원 관련 규정 정비(안 제13조)
 -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성비 명시(후단 신설)
- 다.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안 제2조,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 [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5, FAX : 820-1474, E-mail : kyh06800@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소속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회사무국(의회 의원 포함)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제3항 중 “후생복지운영위원회”를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할 때 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소속공무원 개개인의 복지 수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소속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공간 지원·관리 및 주택전세금 융자
제13조제1항 중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
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u>의하여</u>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따라</u> ----- ----- ----- -----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u>“소속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회사무국(의회 의원 포함)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u></p> <p>2. ~ 4.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u>“소속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회사무국(의회 의원 포함)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u></p> <p>2. ~ 4. (현행과 같음)</p>
<p>제3조(적용범위) ①·② (생략)</p> <p>③ 의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사무국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제1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u>후생복지운영위원회</u>의 심의를 거쳐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p>	<p>제3조(적용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u>후생</u> <u>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u>-----</p>

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신 설>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 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서는 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소속공무원 개개인의 복지 수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12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 9. (생략)

<신 설>

10. (생략)

제13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할 때 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소속공무원 개개인의 복지 수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12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

1. ~ 9. (현행과 같음)

10. 소속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공간 지원·관리 및 주택전세금 융자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제13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① -----

위하여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 략)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4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단서 신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사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지정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1. 2. (생 략)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 ⑧ (생 략)

---- 위원회-----
-----.

② (현행과 같음)

③ -----

-----.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

-----.

<단서 삭제>

1. 2. (현행과 같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 ⑧ (현행과 같음)

【 관 계 법 령 】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력 증진을 위한 사항) 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2021. 10. 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의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2021. 10. 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2021. 10. 8.>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5. 5. 18.>

[전문개정 2008. 12. 31.]